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128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장윤석)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실질적으로 채무자 D의 배우자 F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I회사 구로 주상복합 자동차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H를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3,86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10. 30.까지로 한, ②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6,93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10. 30.까지로 한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은 소외회사를 위하여 ①, ②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가 선급금 반환의무 및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각 불이행하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1997. 12. 13. 피보험자인 H에 보험금 합계 19,530,000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인 D 및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9121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2. 10. 10.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 4. 11.자 2012가소45248호 사건에서 다시 아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 D에 대하여는 2012. 7. 27. 확정되었다.

D, 소외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6,990원 및 그중 19,53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8. 3.까

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자 D의 부친 K(K,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0. 3. 23.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장녀인 채무자 D, 차녀 L, 아들 피고 C이 있었다.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2020. 9. 16.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피고 B 지분 51/100, 피고 C 지분 49/100).

다. D의 재산상태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카명1050 재산명시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가까운 2020. 5. 27. 당시 D은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6인용 소파 1개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D은 망인이 사망한 2020. 3. 23. 무렵 혹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2020. 9. 16. 무렵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 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D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D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D은 망인의 사망 당시(2020. 3. 23.)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 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중 51/450 지분(=해당 피고 지분 51/100×채무자 D의 법정상속분 2/9)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중 49/450 지분(=해당 피고 지분 49/100×채무자 D의 법정상속분 2/9)에 관하여 각 채무자 D과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채무자 D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사해행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D이 망인 생존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미 생활비, 사업비 등 경제적 지원(특별수익)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는 망인과 배우자인 피고 B의 거주지로서 당연히 피고 B이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던 데다가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함에 따라 피고 B의 뜻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악의(惡意)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D이 1992년 출가(出嫁)한 이후로 명절 때나 가끔 보고 자세한 경제생활은 잘 알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금 등에 관하여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자인 피고들에게는 악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각을 구한다.

나.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

(1)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D은 망인으로부터 출가 당시인 1992년 많지 않은 지참금을 받았고, 가끔 생활비도 보탬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 D의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다른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채무자 D에게 지급한 금전을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과 채무자 D를 포함한 각 상속인들의 관계, 지급된 금전의 액수, 그 시기와 빈도, 부담하는 부양 의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금전의 지급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상당한 정도로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채무자 D에게 교부한 지참금이나 보태준 생활비가 일반적, 의례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¹⁾)).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 여부

(1)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②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2호증, 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을 제5, 6호증의 기재는 채무자 부부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 D과 피고 B 사이의 관계는 모녀관계이고, 채무자 D과 피고 C 사이의 관계는 남매관계로서 모두 한 인간에게 있어 가질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 중 하나에 속하는 관계이다. 게다가 피고들은 채무자와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 채무자 D의 재정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1997. 12. 13. 무렵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채무자 D과 소외회사 운영자로서 채무자의 배우자인 F 부부(이하 ‘채무자 부부’라고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N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과 채무자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직선거리로 50m, 걸어서 1분 정도의 거리이다. 채무자 부부가 아무런 연고(緣故)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D 은 인천에서 출생하였고 안양시에서 성장하였으며, F도 서울 구로구에서 안양시로 왔을 따름이다) 경상북도 영주시로 이주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00. 1. 5.이다. 채무자 D이 1993. 7. 27. 아들을, 1998. 4. 20. 딸을 각 출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채무자 부부의 집을, 채무자 부부가 이 사건 주택을 손자녀 돌봄이든 마실이든 수시로 드나들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저런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한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보인다. 특히 채무자 부부가 영주시로 떠날 때에는 채무자 부부의 상황을 포함한 이주 이유에 관하여 얘기를 깊게 나눴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²⁾인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제공이 전혀 안된 깨끗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채무자 D이 빚을 갚으려면 한 푼이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고 담보목적으로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채무자 D의 배우자인 F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2002년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채무자 D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금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울고불고 하였다는 것이다³⁾) 이를 모두 포기하고 금전적 대가가 전혀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겼다는 것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조건, 이를테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 특별수익으로 볼 정도의 재산을 채무자 부부에게 증여하였다는가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그 부분은 채무자 D이 상속했다는가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일정 금액을 채무자 D에게 지급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망인 사망(2020. 3. 23.) 직전 채무자 D이 2020. 2. 20. 채무자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7.자 2020카명1050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송달받았고, 2020. 3. 20. 위 재산명시기일(2020. 4. 20.)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상황에서, 망인의 장례식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채무자 D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동기는 모친 및 동생인 피고들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피력되었을 것임에 틀림없고, 이에 따라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재산목록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지분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 D은 2020. 5. 27. 재산목록에서 중고 생활가전제품과 중고가구 등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유체동산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별지]

부동산목록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 132.2㎡

피고 : 위 부동산 중 51/450지분

피고 : 위 부동산 중 49/450지분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도로명주소 : 안양시 만안구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주택

1층 77.70㎡

2층 78.60㎡

지층 주택 77.95㎡

피고 : 위 부동산 중 51/450지분

피고 : 위 부동산 중 49/450지분

-끝-

1) M,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주석 민법 [상속](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226쪽 참조.

2) 을 제5호증 참조.

3) 을 제6호증 참조.